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대비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이명길 지음



제 2024BD 호

합격증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2024년 시행 신체
손해사정사 제 2 차 시험에 합격하였
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24년 월 일



금융감독원





보상현장에서 긴장감으로 하루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제는 어느덧 이론과 실무 감각을 갖춘 손해사정 전문가로서 수험생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20여년 전 첫 사랑처럼 다가왔던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은 직장생활 내내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자 자량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된 세상이 되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보험상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력있는 손해사정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 이 때,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2024년은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어가는 전환의 시기라 봅니다. 난이도가 있고 변형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젊고 실력있는 응시생들의 출현으로 갈수록 만만치 않은 시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지식 습득과 안정적인 점수 획득을 목표로 한 시험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교재는 책임보험에 대한 기본이론과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문제를 접할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학습한 대로 시간 내에 풀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하고 친절한 설명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합격으로 정해졌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을 절대로 운에 맡기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계획한대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힘을 불어 넣어 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김영길원장님, 유정남실장님, 김지영실장님 그리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꽃인 장기손사와 자동차보상 동료, 모든 선후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자 이명길 드림



1. 최근 10년간 1차시험(절대평가)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현황

연도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2023년	5,238	1,717	32.7%
2022년	4,809	1,795	37.3%
2021년	5,217	1,485	28.4%
2020년	5,221	1,405	26.9%
2019년	4,583	1,667	36.3%
2018년	4,947	1,644	33.2%
2017년	4,926	825	16.7%
2016년	4,351	1,224	28.1%
2015년	4,169	1,507	36.1%
2014년	4,481	802	17.9%

2. 최근 10년간 2차시험(상대평가) 접수자, 응시율, 합격률, 커트라인 현황

연도	접수자 (명)	응시자 (명)	응시율 (%)	합격자 (명)	합격률 (%)	커트 라인 (점)	최고 득점 (점)	합격자(%)		
								20대	30대	40대 이상
2023년	3,037	홈페이지 수험자료실 참고하세요								
2022년	3,075	2,150	69.9	340	15.8	55.00	71.67	28.6	39.8	31.6
2021년	2,981	2,114	70.9	343	16.2	53.50	67.92	28.7	41.9	29.4
2020년	3,121	2,229	71.4	325	14.6	51.25	65.50	38.3	41.3	20.4
2019년	3,249	2,290	70.5	328	14.3	50.42	68.75	36.0	43.8	20.2
2018년	3,177	2,232	70.3	409	18.3	50.83	69.25	32.6	44.2	23.3
2017년	2,786	1,892	67.9	381	20.1	44.42	67.89	32.2	45.1	22.7
2016년	3,323	2,180	65.6	470	21.6	50.25	76.17	28.6	44.8	26.6
2015년	3,247	2,097	64.6	501	23.9	44.08	71.67			
2014년	2,739	1,816	66.3	591	32.5	42.33	74.45			

3. 1TOP손해사정전문학원의 First & Only

1.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스마트 수험지원 시스템 → 특허청 특허출원(홈페이지 참조)	온라인모의고사 응시시스템(1차과목), 온라인첨삭 전용시스템(2차과목), 완강업로드 서비스, 합격에 최적화된 커리큘럼, 스마트밴드 가입 시스템, 상설상담소 운영 등 1TOP학원에서만 가능한 수험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저렴한 수강료	반값 수준의 착한 가격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3. 최강의 1타 강사진	1타 강사를 찾아 이 학원, 저 학원을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4. 국내 최다 콘텐츠 제공	선택에 만족하고 후회하지 않게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5. 1타 장학생 제도 운영	장학생 제도를 정례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1topacademy.com / 뒷표지 QR 코드) 참조

【연간 강의 커리큘럼】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차	기본이론	실전 문제풀이					
2차		기본이론			핵심정리 & 기출문제풀이		

4. 시험에 떨어지는 수험생 유형(빼 때리는 불합격 10계명)

- ① 시간을 못내거나 시간을 안내는 사람 - 자격증 취득이 우선 순위가 아닌 사람이다. 우선 순위부터 정해서 시험을 포기하든지 시간을 내든지 양자택일하라.
- ②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 - 자기성찰과 손해사정사에 대한 vision, 자격증 취득의 목적부터 세워라.
- ③ 공부계획표, 수험전략없이 무턱대고 공부하는 사람 - 네비게이션도 없이 운전하는 격이고 눈감고 운전하는 격이다.
- ④ 공부의지, 공부패턴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 - 중단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공부의 지속성을 유지하라.
- ⑤ 시험을 앞잡아 보거나 짝어서 공부하는 사람 - 시험앞에 겹쳐해질 때 합격한다. 교만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마라.
- ⑥ 이 책 저책, 이 자료, 저 자료, 이 학원 저 학원 강의를 모두 섭렵하려는 사람 - 수집생이 되지 말고 수험생이 되라.
- ⑦ 교재정독 소홀히 하는 사람 - 기본서 다독이야말로 기본중의 기본이다. 기본서 다독으로 기본기부터 확실하게 다져라.
- ⑧ 이해 없이 덮어놓고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사람 - 단순 무식하게 암기해서 절대 합격못한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라.
- ⑨ 지문 탐독(해석)을 엉뚱하게 하거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 - 탈락자 중 지문탐독 잘못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 혹시 난독증이라면 난독증 치료부터 먼저 하라.
- ⑩ 강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 본인만 손해다. 강사를 믿고 강사를 믿는 자기 자신을 믿을 때 비로소 합격의 문이 열린다.

※ 위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거의 99.9%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1개 항목에만 해당돼도 합격은 쉽지 않습니다. 유념하셔서 시험에 합격하는 유형의 수험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연합모의고사 (1·2·3회차)					
전국연합모의고사 (1회차)	실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전국연합모의고사 (2회차)	

5.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1) 시험과목

제1차 시험

구분	1 교시	2 교시
	10 : 00~11 : 20(80분)	11 : 50~12 : 30(40분)
손해사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제2차 시험

구분	시간	과목
재물 손해사정사	1교시(10 : 00~11 : 30,90분)	회계원리
	2교시(11 : 50~13 : 20,90분)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교시(14 : 20~15 : 50,90분)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차량 손해사정사	1교시(10 : 00~11 : 30,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교시(11 : 50~13 : 20,90분)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신체 손해사정사	1교시(10 : 00~11 : 30,90분)	의학이론
	2교시(11 : 50~13 : 20,90분)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3교시(14 : 20~15 : 50,90분)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교시(16 : 10~17 : 40,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2)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

구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손해사정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매과목 40 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중 전과목 평균 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 원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 : 50명
			선발예정인원 : 110명
			선발예정인원 : 340명

※ 선발예정인원은 2023년 제46회 손해사정사 시험 선발예정인원 기준입니다.



PART 01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CHAPTER 01	책임보험 기본이론	2
제1절	배상책임보험의 개념과 특징	2
제2절	법률상 배상책임 종류	4
제3절	일반 불법행위책임	5
제4절	특수 불법행위책임	9
제5절	채무불이행 책임	17
제6절	특별법상 책임	19
CHAPTER 02	손해배상금의 산정	31
제1절	손해배상금 산정 일반원칙	31
제2절	손해의 종류	32
제3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3
CHAPTER 03	배상책임보험 핵심이론	50
제1절	배상책임보험의 기능	50
제2절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51
제3절	배상책임보험의 주요 용어정리	54
제4절	배상책임보험의 일반 면책사항	60
제5절	배상책임보험의 비용	62
제6절	피해자 직접청구권	66
제7절	타보험조항	68
제8절	보험자의 대위권	73
제9절	사고발생통지 및 손해방지의무	75
제10절	보험자의 협조·대행의무	77

CHAPTER 04 배상책임보험 주요 약관	79
제1절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	79
제2절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109
제3절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Propessional Liability Insurance).....	116
제4절 개인 배상책임보험.....	132
제5절 의무 배상책임보험.....	136
제6절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184
CHAPTER 05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198
제1절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특징.....	198
제2절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약관 구성.....	200
제3절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주요 용어정리.....	203
제4절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	214
제5절 국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222
제6절 해외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235
제7절 선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241
제8절 직업훈련생 근로재해보장책임보험.....	251

PART 02

부 록

I.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256
II.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275
III.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특별약관.....	358

PART

01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 1 절 배상책임보험의 개념과 특징

1 의의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다(상법 제719조).

개인 및 사업주는 배상책임 관계에서 가해자의 지위에 놓일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써 개인활동 및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다.

2 기능

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임의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보호기능을, 의무배상책임은 피해자의 구제기능이 강조된다.

(1) 피보험자 보호

배상의무자인 피보험자의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험을 사전에 보험자에게 전가하여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피해자 구제

배상의무자인 피보험자의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의무가 이행되므로 변제능력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3 특징

(1) 보험의 목적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됨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될 피보험자의 전재산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의 객체와 같으며 재물보험 또는 인보험 등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특정 물건 또는 특정인의 생명 및 신체로 보험가입시 특정되지만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물에 발생한 손해가 사고의 객체로 보험가입 시 특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2) 보험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이 보험사고가 되는데 어느 시점을 보험사고의 시점으로 볼 것인가가 손해발생의 시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보험사고 시점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나 재물보험이나 인보험 등 다른 손해보험과 같이 생명, 신체,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보험사고의 시점으로 보는 손해사고설이 통설이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 시점에 대한 다른 학설로는 손해사고설과, 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날짜를 보험사고로 보는 배상청구설, 피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날로 보는 책임부담설, 채무확정설, 배상의무이행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3)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최고가액으로서 보험의 목적의 시가를 말하며 손해보험의 고유한 개념으로 보험의 목적을 시가 등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배상책임보험 중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사고발생 객체는 불특정한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물인 점에서 보험가액은 무한으로 볼 수 있으나 보관자책임보험에서는 그 보험목적의 특정되므로 화재보험과 같이 보험가입시 보험가액을 평가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이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제 2 절 법률상 배상책임 종류

1 의의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민법상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특수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으며, 상법, 제조물책임법, 실화법 등의 특별법으로 구분한다.

(1) 일반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만을 담보하며,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2) 특수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5조부터 제760조까지 특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① 제755조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② 제75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
- ③ 제757조 : 도급인의 책임
- ④ 제758조 :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⑤ 제759조 :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⑥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3) 채무불이행책임과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책임은 당사자 간 계약의 내용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계약책임이라고도 한다.

(4)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

민법 이외에도 상법, 제조물책임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 환경오염피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등과 같이 특수한 영역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과실책임주의에 수정을 가하는 책임법리를 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2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차이점

구분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법률 근거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과실 입증책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 자신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채무불이행한 날로부터 10년
피용인의 행위에 의한 책임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담(756조)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의한 채무자의 책임(391조)
태아의 지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762조)	규정 없음

제3절 일반 불법행위책임

1 의의

민법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성립요건 기출 14(약술 5점) | 23(약술 10점)

(1) 고의 또는 과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하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고의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구분하며 법적 평가는 동일하다. 미필적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감히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제도에서 고의 사고는 절대적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 발생을 예견했어야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즉 주의의무위반을 말한다. 과실은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로 나누어지며, 주의정도에 따라 경과실, 중과실로 구분하며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2) 책임능력

1) 의의

책임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이는 불법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책임능력이 없으면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없었음은 가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민법 제753조)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만 12세 이하에서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만 12세에서 만 15세 사이에서는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판단력의 차이,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임능력의 인정 여부가 다르게 판정하고 있으며, 만 15세 이상에서는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3)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민법 제754조)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신상실이란 판단능력이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가해자의 가해 행위 당시에 심신상실의 상태였으면 충분하며 이는 불법행위 당시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3) 위법행위

1) 의의

위법행위란 법률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 있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말한다. 반사회적인 가해행위가 있을 경우 위법성은 추정되고, 가해자는 불법행위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해야 한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일정한 가해 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민법에서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고 해석상으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자력구제가 인정된다.

- ① 정당방위 : 타인의 불법행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민법 제761조 제1항).

- ② 긴급피난 : 자기나 제3자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761조 제2항).
- ③ 기타 위법성 조각사유 :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자력구제의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4) 손해의 발생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침해로 생긴 불이익을 의미하며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5) 인과관계

인과관계란 특정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그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설이 통설로 인정된다.

3 효과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약술기술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약술하십시오. (5점)

기술 14/23

4 소멸시효

(1) 법률규정

민법 제766조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의 인식을 말한다. 손해의 구체적인 정도나 금액을 알 필요는 없으며,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된다.

5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1) 과실책임주의

과실책임주의란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로서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법리이다. 이를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하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무과실책임주의

1) 무과실책임주의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위법행위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를 말한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주의가 고의·과실이 없어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무조건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니며, 무과실책임주의 하에서도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책임의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등 특수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다중이용업소, 재난배상책임 등의 특별법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중간책임주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보다 쉽게 인정하는 책임주의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제755조), 사용자의 책임(제756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제758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제759조)이 있다.

3) 보상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보다 확장된 책임으로 피해자의 과실부분에 대하여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보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책임법리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보상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PLUS

🌲 무과실책임주의 확대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기계문명의 발달, 거대 기업의 출현, 공해산업(公害産業)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현실은 자기책임주의에 대한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험책임(危險責任), 보상책임(補償責任), 원인책임(原因責任), 공평책임(公平責任), 결과책임(結果責任) 등의 이론에 의한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의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공작물(工作物)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758조) 등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광해배상(광업법 제91조 내지 제98조), 근로자재해보상(제81조 내지 제95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원자력손해배상(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제조물책임(제조물책임법 제3조 내지 제7조)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주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제4절 특수 불법행위책임 기출 16/17(약술 10점)

일반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책임주의 또는 자기책임의 원칙으로 가해자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 구제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고의·과실이 없어도 가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거나 자신이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의 과실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이를 특수 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한다.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기출 17(약술 10점)

(1) 의의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심실상실자가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 친권자, 후견인, 대리감독자 등과 같이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률 규정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3) 요건

1)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즉, 불법행위 성립요건 중 책임능력을 제외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감독의무자 또는 대리감독 하는 자의 감독의무 해태

감독의무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부담하나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감독의무자가 입증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입증책임을 감독의무가 있는 자에게 전환하여 중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정감독자로는 친권자, 후견인 등을 들 수 있으며, 대리감독자는 어린이집 교사, 초등학교 교사, 학원 원장, 정신병원 의사 등이다.

(4) 효과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나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감독자가 타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규정상 그 부모 등 감독자는 어떠한 법률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감독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부모 등 감독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감독자의 관리감독 소홀의 과실에 따른 본인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때,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 측에 있다.

약술기출

장기종합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열거하고,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법리를 약술하십시오. (10점)

기출 17

2 사용자의 배상책임

(1) 의의

피용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게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근재보험에서 사용자 배상책임(E/L)과 용어는 유사하나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법률 규정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용자에게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③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특징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점에서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다만,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전환되어 '중간책임주의'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사용자의 면책을 인정한 예가 거의 없어 사실상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4) 요건

1) 사무집행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 할 것

사용자와 피용자간에 사무에 종사하는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관계란 피용자를 선임하고 감독하는 관계를 말하며 영리적이거나 계속적인 것이 필요가 없으며 보수의 유무나 기간의 장단을 묻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는지가 사용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이다.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

제3자는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와 그의 사용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동료 피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발생한다. 이때 피용자의 모든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피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3)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것

피용자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발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를 충족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판례는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이라 할 수 있다.

(5) 효과

사용자는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사용자에게 같음하여 피용자를 감독하는 대리감독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는 독립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사용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형성하여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6) 구상권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한 때에는 그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판례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 법 규정상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대리감독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리감독자의 과실과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도급인의 책임

(1)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일을 맡기는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라 한다. 이러한 도급계약상 일을 맡은 수급인은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7조는 이러한 취지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2) 법률규정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서조항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휘·감독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민법 제 757조 단서에 기한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도급인의 책임이 발생한다 하겠다. 여기서 “도급인의 지휘 감독없는 ” 수급인의 독립적인 지위라 함은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인사노무관리 독립성이라 함은 수급인이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평가, 휴게시간, 휴일 및 시간외 근로, 인사이동 및 징계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경영상 독립성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기계나 설비를 사용하고, 스스로 기획하며 전문적 기술이나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없으나, 실제 수급인이 도급인의 실질적인 관리·감독하에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다만,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아닌 도급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감리’의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데 지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4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 의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증명이 되었을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위험책임’의 법리에 있다. 즉,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점유하거나 소유하는 자는 위험의 방지에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2) 법률규정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요건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에 ‘하자’가 있을 것

공작물이란 건물, 도로, 다리, 철도, 터널 등과 같은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된 토지상의 공작물 및 건물 내·외의 설비인 계단, 엘리베이터, 광고판 및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도 포함된다.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성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작물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다만, 판례에서는 공작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에 하자가 있음이 추정된다고 하여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다.

2)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상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만일 불가항력으로 인한 자연재해 또는 제3자의 방화 등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3) 공작물 점유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

공작물 점유자는 손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작물 소유자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고 무과실책임을 진다.

(4) 효과

공작물 점유자가 1차 책임을 지고,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공작물 소유자가 2차 책임을 지며,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으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발생에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5) 구상권

점유자·소유자 외에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 (예로 공작물 제작업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 가 있으면 배상을 한 후 그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사례기술 20

(1) 의의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소유자가 누구인

지는 묻지 않는다. 중간책임주의가 적용되어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2) 법률 규정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3) 요건

1)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동물의 종류는 묻지 않으며 여기서 손해는 대인·대물 손해를 포함한다. 집에서 키우거나 사육하던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를 말한다.

2)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주의의무의 정도는 동물의 종류,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4) 효과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공작물책임과 달리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 그 소유자(간접점유자)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6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의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한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각 수인의 행위자가 연대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각각의 행위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연대 채무자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판례에서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이 없이 상대적 효력만 발생하므로 피해자에게 항변하지 못한다.

(2) 법률규정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3) 공동불법행위의 유형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제760조 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인이 1인을 동시에 집단 폭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① 각자의 행위에 관한 요건 :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의 독립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또한 각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며,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 ② 행위의 관련 공동성 : 각 행위자 간에 행위의 공동성이 있어야 한다. 행위의 공동성은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성 또는 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행위자 간 의사의 공동인식이나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제760조 제2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각 행위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 불법행위의 교사·방조자(제760조 제3항)

불법행위의 교사자와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 교사란 타인에게 불법행위 실행의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방조란 불법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 내지 조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연대채무란 여러 사람의 채무자가 각자 전부를 이행 할 의무를 부담하되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달리 주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주로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채무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때, 채무자 1인에게 발생한 사유는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는 주관적 공동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을 통해 공평한 손해의 분담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그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PLUS

🌲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 경우

1.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의무 상호 간 (민법 제760조)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상호 간 (민법 제 756조)
3.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와 대리감독자의 손해배상의무 상호 간 (민법 제755조)

📖 약술기술

- 01 민법상 특수 불법행위책임을 열거하고 내용을 약술하십시오. (10점) 기술 16
- 02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판례에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보는 경우에 대한 민법상의 관련 규정을 2가지 기재하십시오. (10점) 기술 20
- 03 갑, 을, 병에게 적용되는 민법상의 특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십시오. (계산문제에 포함된 약술 10점) 기술 20

제 5 절 채무불이행 책임

1 의의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민법 제390조).

배상책임보험 영역에서는 주로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 배상책임(TPL)을 담보하며, 채무불이행책임은 일부 특별약관을 통하여 담보하기도 한다. 예로는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창고업자 특별약관과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물적손해확장담보 추가특약이 있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1) 이행지체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이행불능

채무가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으나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보관자 배상책임보험 (임대차, 도급, 보관)에서 담보할 수 있는 위험으로 보관한 물품을 분실, 전소 등으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3) 불안전이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채무 이행에 흠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불량품이 납품된 경우 또는 대여한 물품이 손상되어 반환된 경우를 말한다.

3 인정 요건

1) 고의·과실

계약책임으로 발생한 채무불이행 행위가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피해자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반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불이행 상태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2) 손해의 발생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일정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3) 인과관계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

4 효과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 또는 10년인 점에서 구별하여야 한다.

PLUS

🌲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구분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 채무자의 귀책사유 존재 • 손해배상의 범위, 방법: 통상손해, 예견가능성, 과실상계 • 대위권 행사 	
차이점	입증책임	피해자(고의, 손해, 인과관계)	가해자(고의, 책임, 위법성)
	연대책임	민법 제760조	규정 없음
	태아권리	권리능력 인정	내용 없음
	소멸시효	손해/가해자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일반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입증 책임	고의 과실	피해자	가해자
	책임능력	가해자	가해자
	위법성	가해자	가해자
	손해	피해자	피해자
	인과관계	피해자	피해자

제 6 절 특별법상 책임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기출 15/18 (약술 10점) | 21 (약술 4점)

(1) 의의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판매업자가 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아니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 손해만이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제조물책임은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한 ‘결함책임’이라는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리콜제도는 결함 제품의 수거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제조물 책임제도는 물품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을 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 제도이다.

(2) 제조물의 적용범위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부동산이나 무형의 동산은 제조물이 아니다. 제조란 재료에 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이고, 가공은 재료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더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되지 않은 1차 생산물인 농수산물 등은 제조물이 아니지만, 여기에 가공이 된 경우에는 다시 제조물이 된다.

(3) 법적 근거

2000년 1월 12일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 결함책임주의

책임법리는 결함책임주의로 제조자는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이는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위법성’과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만을 요구하고 있어 ‘무과실책임’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된다.

(5) 배상책임자

1) 제조업자(완성품제조, 부품제조, 원료제조 등)

- ①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②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2) 판매(공급)업자

영리 목적으로 제조물을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제조물의 제조한 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당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3) 시공(설치)업자

정수기, 승강기, 주차시설, 광고판, 전기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작업을 하는 자

(6) 결함

1) 결함의 개념(제2조)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2) 결함의 유형

- ① 제조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②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③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품 설명서의 오류도 여기에 해당된다.

3) 결함의 판단기준

- ① 표준일탈기준 : 설계서나 시방서 등 표준을 벗어난 것을 결함으로 인정
- ② 소비자자기대기준 : 통상의 소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경우 인정 (통설)
- ③ 위험-효용기준 : 제조물의 효용이나 이익, 위험이나 불이익을 비교하여 위험이 효용보다 클 경우 결함을 인정
- ④ 대체기준 : 합리적인 대체 수단인 설계나 지시 또는 경고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 결함으로 인정

(7) 입증책임

1) 3대 원칙

-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 ②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③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인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단, 제조자는 결함 발생에 대하여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더라도 면책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결함의 추정 기출 18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시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일반적인 피해자가 전문적인 제품의 결함 및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피해자는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면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②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 ③ 손해가 해당 제조물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8) 면책사유(제4조) 기출 21(약술 4점)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①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불공급 사실)
- ②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개발위험의 항변)
-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법령준수의 항변)
- ④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원재료, 부품제조업자의 항변)

다만, 배상책임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②내지 ④의 사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제4조 제2항).

(9) 제조물책임에 따른 청구권 소멸시효(제7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 후 증상이 나타나는 장기적인 축적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10)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1) 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 이외에 가중된 징벌성격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영미법계에서 인정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도 점차 도입되어 일부 법률제도 내에서 적용되고 있다.

2)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 ① 법률규정 :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에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② 판단기준
 - 고의성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위탁취소, 반품, 대금감액 및 기술 유용의 경우
-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의 고의로 차별적 처우가 반복된 경우
- ③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⑥ 제조물책임법

📖 약술기술

기출 15/18/21/22 (약술 10점)

- 01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의 의의와 결함에 대해 서술하시오.
- 02 2018년 4월19일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취지, 주요 개정내용(제조업자의 책임, 결함의 추정)을 약술하시오.
- 03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약술하시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 ○○전자가 제조·공급한 냉장고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김○○이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 김○○은 사고 발생 전 예정되어 있던 해외유학이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취소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10점)

01

상기 사고의 피해자 김○○의 손해배상청구가 제조물책임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답안

1. 제조물책임 인정여부 (제조물책임 법리)

피보험자 ○○전자가 제조한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자는 피해자 김○○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유학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인정여부

○○전자의 제조물책임을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정된다. '특별손해'란 사고발생 시에 가해자가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보상이 되는데, 이때 ○○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으므로 김○○이 주장하는 해외유학 취소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02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약술하시오. (4점)

답안

제조물의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1)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다만, 배상책임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 내지 (4)의 사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의료과실(과오) 책임 기출 18(약술 10점)

(1) 의의

의료행위 중에 의사 또는 기타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환자의 신체손해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의료계약에 따라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맞게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진료채무)를 부담하며, 그 의무를 위반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에 해당하므로 의료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2) 주요 개념

1) 의료행위

의료인이 진료, 수술, 투약 처방 등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의료인

의료인이란 정당한 법적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이들이 의료인의 지시하에 한 의료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시를 한 의료인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 및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3) 의료사고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잘못 행하였거나 당연히 행하였어야 할 의료행위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를 말한다.

4)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주위의무위반을 의미하며, 이는 적극적인 의료행위 또는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 발생한다.

의료과실에 대한 판단기준은 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료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의사의 과실판단의 기준은 의료행위시 의료사고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여부로 판단한다.

(3) 책임 범위

1) 과실책임주의

의사 및 병원은 환자와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계약을 맺고 그 채권·채무를 이행하는바, 진료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는 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 및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피해자인 환자로서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유리하나, 판례에서는 주로 불법행위책임을 청구원인으로 삼는다. 따라서 의료과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환자 측에서 민법 제750조의 요건인 ① 의사의 과실있는 의료행위 ② 손해의 발생 ③ 인과관계)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입증책임의 완화(과실의 추정)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판례와 통설은 피해자인 환자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과실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3) 책임제한

일반적인 과실상계와 다른 의료인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한 의료인의 책임을 통상 30~70% 제한하고 있다. 의료인에게 결과의 책임을 모두 부담시키면 위축된 방어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4) 의사의 설명의무

1) 의의

의사는 환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중요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환자가 단순한 진료의 객체가 아니라 의사와 대등한 인격적 존재로 인정되어야 마땅한 자기결정권에 대응하여 인정되는 의료인의 의무’이다.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승낙은 무효이며 그 치료행위는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다. (의료계약: 채무불이행 원인, 인격침해: 불법행위)

2) 설명의무의 범위 및 동의사항(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②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③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의 성명
- ④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⑤ 수술 등 전후에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① 위자료만 인정되는 경우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치료방법 또는 범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여 자기결정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고,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인정된다.
- ② 위자료 이외에 모든 손해배상금을 인정되는 경우 : 환자 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PLUS

🌲 의료과실배상책임 면책위험

1.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원자핵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방사능을 이용하여 의료진단을 하는 경우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공인되지 아니한 특수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약술기술

- 01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조항에서 말하는 담보하는 의료과실의 정의, 법률상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 약술하십시오. (10점) 기술 18
- 02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하여 기재하고, 담보위험에 대하여 약술하십시오 (10점) 기술 23

3 환경오염책임

(1) 의의

환경오염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의 원인 및 손해, 인과관계 등을 입증 어렵고 그로 인한 사고기업, 피해자, 국가 모두에 그 피해가 막대하며 소송비용·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며 이로 인한 기업의 도산, 기업이미지의 실추, 브랜드 가치하락 등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에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의무보험의 가입 의무화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오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4호)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 및 진동·악취·일조방해·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법적근거

환경오염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는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과 2016년 1월에 시행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① 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장범위(시행령8조)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은 사업장별로 환경오염피해 한 건마다 아래의 보장금액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가군 시설 : 300억원
 ② 나군 시설 : 소기업의 시설 80억원, 소기업 외의 시설 100억원
 ③ 다군 시설 : 소기업의 시설 30억원, 소기업 외의 시설 50억원

(4) 인과관계의 추정(시행령 제9조)

- 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③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관계 법령 및 인허가 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 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 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사업자는 반드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1) 의의

가해자의 악의적 불법행위, 비도덕적, 반사회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법계에서 등장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요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에 악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한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악의적, 의도적으로 결과를 용인하는 정도의 심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기능

- ① 법 준수 기능 : 가해자를 민사적 처벌로 제재하므로서 법의 준수 효과를 강화한다.
- ② 제재적 기능 : 사회적 전시효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한다.
- ③ 전보적 기능 : 법정 손해배상금 이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피해자를 위로한다.

(4) 제조물책임법 적용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에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5)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 절 손해배상금 산정 일반원칙

1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기본으로 금전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394조). 따라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를 손해배상금의 산정이라고 한다.

2 산정 기준시점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시가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준 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시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연5%의 이자를 가산하여 법정이율로 정하였다(민법 제379조).

3 손해 3분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재산에 피해를 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재산적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에 대한 기존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적극적 손해와 장래 이익 획득의 기회가 상실됨으로써 입은 손실인 소극적 손해로 나뉜다.

특히 신체사고에서 소극적 손해는 소득상실설(차액설)과 노동능력상실설(평가설)로 학설이 나뉜다.

소득상실설은 불법행위 이전의 이익과 이후의 이익의 차이를 손해로 보며, 노동능력상실설은 손해를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이익을 손해로 보는 학설이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를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으며 손해액에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제2절 손해의 종류

1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소유의 재산에 감소가 발생된 것과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취득이 없어진 금전적 손해이며, 정신적 손해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손해를 말한다.

2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이 해당된다.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3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다. 통상손해는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의 일반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특별손해는 해당 손해 발생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경합하여 원인을 이룸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말하는데, 민법 제393조 제2항에서는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술기술

생산물 배상책임을 가입한 피보험자 ○○전자가 제조·공급한 냉장고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김 ○○이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 ○○은 사고 발생 전 예정되어 있던 해외유학이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취소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10점)

기출 21

제3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출 19 (사례 30점) | 14 (약술 15점) | 21/22 (사례 30점) | 23 (사례 40점)

1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여 발생(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간호비, 장례비 등이 있다.

(1) 치료비

1) 발생(기왕)치료비

발생치료비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응급처치, 진찰, 처방, 수술, 입원비용 등 치료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의료비를 말한다.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로 한정되며, 기왕증 치료 목적이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향후치료비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물 제거비, 물리치료비 등과 같이 증세의 개선, 악화 방지나 생명 연장 등의 것을 말한다.

향후치료비는 장래 1회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장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나, 1회적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산식

향후치료비 현가액 = 1회 향후치료비 × 경과년수 H계수의 합 × [1 - 피해자 과실율(%)]

연습 치아보철비용 200만원, 교체주기 10년, 기대여명 35년, 피해자 과실 50%
- 경과년수에 따른 H 계수 : 10년(0.5), 20년(0.4), 30년(0.3)

풀이 200만원 × (1 + 0.5 + 0.4 + 0.3) × (1 - 50%) = 2,200,000원

3) 보조구비

보조구는 의안, 의수, 의족, 목발, 휠체어, 보청기 등 의료 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현가와 교체 횟수는 주치의 등 의사의 소견으로 결정한다. 보조구비도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산식

$$\text{보조구비 현가액} = \text{보조구비} \times \text{경과년수 H계수의 합} \times [1 - \text{피해자 과실율(\%)}]$$

연습 월체어 100만원, 교체주기 10년, 기대여명 45년, 피해자과실 30%
 - 경과년수에 따른 H계수 : 10년(0.5), 20년(0.4), 30년(0.3), 40년(0.2)

풀이 100만원 × (1+0.5+0.4+0.3+0.2) × (1 - 30%) = 1,680,000원

(2) 개호비

1) 의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후유장애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고 한다. 개호비가 인정되는 주요 신체장애로는 완전 또는 불완전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보행 불능 또는 보행장애, 배뇨·배변의 장애, 양안실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개호에는 직업적인 개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등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것도 개호에 해당되며 실제로 개호비가 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2) 개호비의 산정

개호는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개호인 수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0.5인에서 2인까지 인정된다.

산식

$$\text{보통인부노임(일)} \times 365\text{일}/12 \times \text{개호인 수} \times \text{개호기간(월)의 해당 H계수} \times [1 - \text{피해자과실율(\%)}]$$

(3) 장례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도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 판례는 장례비의 지출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 500만원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장례비 청구권자는 실제 장례비를 부담한 유족,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이다.

2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 장애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① 일실수입 ② 일실퇴직금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실수입 기출 14 (약술 15점) | 23 (약술 10점)**1) 개념**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 할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말한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상으로 인한 수입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휴업손해라 하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을 상실수익액이라고 한다.

2) 일실수입의 학설

- ① 차액설(소득상실설) : 일실수입은 사고 전후의 수입을 비교하여 산출한 금전적인 수입의 감소만을 손해로 본다. 이 학설에 따르면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가 없으면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학설에 따르면 무직자, 미성년자와 같이 현재 소득이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 ② 평가설(노동능력상실설) : 일실수입의 본질을 노동능력 상실 그 자체로 본다. 이 학설은 실제 수입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면 손해가 있다고 본다.
- ③ 판례의 태도 : 실무적으로는 종래 차액설을 인정하여 오다가, 평가설에 의한 계산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이래로 대체로 평가설의 입장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 전반적 사정을 보고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되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하면 된다.

3) 일실수입의 산정요소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① 월소득 ② 가동연한 ③ 노동능력상실률 ④ 여명기간 ⑤ 생활비 공제 ⑥ 중간이자 공제를 고려한다.

PLUS**🌲 일실수입 산정방식**

1. 사망 일실수입 : 월소득 × (1 - 1/3) × 가동연한에 해당하는 H 계수 × (1 - 피해자 과실율)
2. 장애 일실수입 :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가동연한에 해당하는 H 계수 - 사고일 ~ 치료 종결일에 해당하는 H 계수) × (1 - 피해자 과실율)
3. 입원 일실수입 : 월소득 × 100%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1 - 피해자 과실율)
4. 통원 일실수입 :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 ~ 치료 종결일에 해당하는 H 계수 - 사고일 ~ 퇴원일에 해당하는 H 계수) × (1 - 피해자 과실율)

가. 직업별 소득

- ① 급여소득자 : 현실소득액은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이다. 실제 수입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임금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직전 1년 또는 3개월의 소득의 평균 등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으로 실비변상 성격의 경우 소득에서 제외한다.
한편 급여소득자의 산정한 소득이 보통인부 일용노임보다 적은 때에는 보통인부 일용노임에 의한 청구를 인정한다.
- ② 사업소득자 : 개인사업자는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한정하여야 하므로, 전체 사업 수익에서 해당 피해자의 기여도를 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도 용이하지 않으며, 주관적 판단의 개입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세무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인 소득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증된 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하고 피해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산정하며,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직업 유형별 통계소득을 활용하여 월현실소득액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월 현실소득액이 보통인부 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인부 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기출 23(약술 10점)
- ③ 일용근로자 :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시중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임금 실태조사보고서의 개별직종노임단가 또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참고로 해당 일용노임에 가동일수를 곱해서 월현실소득액을 산정하고, 농촌 일용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도시 일용노동자는 22일, 농촌 일용노동자는 25일을 월 가동일수로 산정한다.

예시

▷ 2023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건설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일 161,858원
보통인부 일용노임단가 161,858원 × 22일(월 가동일수) = 3,560,876원

- ④ 외국인 : 적법한 취업활동을 인정받은 외국인은 해당 체류기간까지는 국내소득을 인정하고, 적법한 체류기간이 지난 시점부터는 본국 기준으로 산정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통상적인 불법체류 예상기간 동안은 국내소득을 인정하고, 그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는 본국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⑤ 무직자, 가정주부 : 사고 당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출한다.